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3드단1259 위자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강태현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
담당변호사 박규택, 이범주, 이승찬
변 론 종 결 2014. 1. 28.
판 결 선 고 2014. 2. 11.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3. 3. 21.부터, 피고 C는 2013. 4. 9.부터 각 2014. 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혼인생활 및 자녀

원고와 피고 B은 1995. 10. 21. 혼인 후 자녀로 D(1996년생, 여), E(1997년생, 여), F(2001년생, 남)을 두었다. 원고와 피고 B은 2012. 2. 17.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고, 2012. 5. 22.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법원으로부터 의사확인을 받은 후, 2012. 7. 10.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협의이혼 당시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정하였다.

2) 혼인 파탄 경위

가)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갈등을 겪던 도중 2010년 하순 무렵 가출하였고, 2012년 1월에 귀가하여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13. 피고 B에게 '피고 B을 의심하지 않고 급여를 피고 B에게 지급하여 용돈을 받아 생활하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후인 2012. 3. 9. 다투면서 서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라) 피고 B은 피고 C와 성교하여 2012. 5. 8. 임신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3. 1. 3. 자녀를 출산하였다. 피고 B은 2012년에 피고 C를 주피보험자로 하여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자동차보험에 대한 보험료로 654,380원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3년 1월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를 정리하면서, 피고 B이 태아를 대상으로 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들의 성교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 피고 B은 혼인 기간 중 무속인으로 활동하면서 원고 거주지 내에 신당(神堂)을 설치하였는데, 원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거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아이드림산부인과 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비록 원고와 피고 B이 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후에 피고들이 성교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위 시기는 원고와 피고 B의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던 시점이었고,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그 이전부터 교제하여 왔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는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금액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혼인관계 파탄 경위,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1,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2) 피고들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폭행과 부당한 의심 등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었고 피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의 판단을 뒤집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다. 소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피고 B는 2013. 3. 21., 피고 C는 2013. 4. 9.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세용